

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4년 11월 23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4년 11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16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04년 12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 제안이유

-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용자 지원하기 위하여 부천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를 제정(1994.11.10, 조례 제1296호)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여 왔으나, 지원금액의 불합리(500만원 이하) 및 2인 이상의 연대보증 요구의 비현실성 등으로 용자금 신청자가 감소하고 사업운영이 유명무실하여 관련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를 폐지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input type="radio"/> 없음	<input type="radio"/>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없음

나. 반대토론

없음

5. 심사결과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318호
의결 년월일	2004.12.23 (제116회)

제출년월일 : 2004. 11.23

제출자 : 부천시장

폐지이유

-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용자 지원하기 위하여 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를 제정(1994.11.10, 조례 제1296호)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여 왔으나, 지원금액의 불합리(500만원이하) 및 2인이상의 연대보증 요구의 비현실성 등으로 용자금 신청자가 감소하고 사업운영이 유명무실하여 관련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동조례 폐지”

첨부

- 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용자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부한 용자금에 대하여는 이를 일반회계로 귀속하고, 미상환된 용자금은 상환시까지 폐지 전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1994. 11. 10 조례 제1296호]

[1998. 10. 10 조례 제1603호]

[1999. 04. 30 조례 제1648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용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소득지원사업

제2조 (용자대상 마을) ①용자대상마을 또는 가구는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마을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당해 주민이 단합되어 있는 마을
2. 잘 살아보자는 자립의욕이 있으나, 마을 여건등으로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3. 새마을소득사업(이하 "소득사업"이라 한다)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
4.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로서 생활태도가 건전하며 자립의욕과 능력있는 가구

②시장은 사업대상마을 또는 가구를 선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용자대상사업) ①용자대상사업은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소득증대사업으로서 안정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큰 사업이어야 한다.

②다만, 마을공동사업일 경우에는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서 주민총회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 (용자한도 및 이율) ①용자한도액은 마을당 1천만원이상 1억원, 가구는 5백만원 범위내로 한다.

②용자금의 이율은 무이자로 한다.

제5조 (대부기간) 용자금의 대부기간은 3년거치 2년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질에 따라 2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용자금 대부신청) ①용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마을은 통장과 새마을지도자공동명의(가구의 경우 개인명의)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부신청서에는 사업참가자 전원이 상호 연대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가구 단위로 대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당해 마을주민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이 있어야 한다.

제7조 (용자금의 상환) 용자금의 상환은 년 1회에 하되, 그 기한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환기한만료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6.30, 12.31)로 한다.

제8조 (용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시장은 부천시의회 의결을 받아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일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가산금 및 독촉) ①상환금을 상환기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환기한이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에 대하여는 시중은행 연체이자율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 시장은 상환기한 경과 1월, 2월 및 3월후 각각 10일이내의 상환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전에 징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우수농고생 소득사업 용자특례) ①농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농촌 정착의지와 자립영농의욕이 뚜렷한 모범학생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의 추천에 의거 지원대상 학생의 보호자 명의로 소득사업 자금을 용자할 수 있다.

②우수농고생에 대한 용자금은 소득사업자금의 세입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용자한도액은 학생 1인당 2백만원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자금의 대부기간은 3년거치 2년상환 무이자로 한다.

제11조 (감독) 시장은 자금의 용자를 받은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 감독하고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특별회계의 설치

제12조 (설치) 소득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3조 (세입. 세출) ①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자금 운영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소득사업을 위한 용자금으로 한다.

제14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4장 보 칙

제16조 (용자금의 대출)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의 대출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고, 용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중복용자의 금지) 용자금을 대부받은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하여는 용자금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용자할 수 없다.

제18조 (용자금의 반환) 시장은 용자금을 대부받은 마을 또는 가구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전이라도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소득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
3. 자금을 용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제19조 (체납처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 상환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상환기간 경과후 6월이내에도 상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상환통지를 받고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제20조 (감면조치) 자금을 용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4.11.10 조례 제12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의 소관 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②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및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관리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분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4.30 조례 제1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